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감사청구 감사기간 제한 등〉

■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6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7. 19.
3. 회부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감사기간 연장 제한 관련(안 제75조제1항)

- ☐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 ----- ----- ----- ----- <u>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u> -----.

- ☐ 감사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1996년에 도입한 ‘공익감사청구제도’¹⁾에 이어,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들의 감시자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2001년

1)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²⁾ 2008년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6장 국민감사청구”에서 감사청구, 감사실시의 결정,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2) 남창우, 공공감사의 구성체계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익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비교>

종류	공익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도입 시기	1996	2002. 1. 25. 시행
법적 근거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감사원 훈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청구주체	국민(300인 이상), 시민 단체, 감사대상 기관장,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의 장, 국무총리	국민(300인 이상)
청구대상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 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기관	감사원	감사원(국회, 법원, 선거 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해당기관)
실시여부의 결정	감사원 사무총장(공익감사 청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 가능)	국민감사청구심사 심사위원회
실시기간	6개월 이내	6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자료: 남창우, 공공감사의 구성체계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를 이유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국민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동 법 제72조에 따른 감사청구권은 ①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자체 사무’는 감사원 등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동 법 제76조에서 감사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 중이고, 동 규칙 제13조제1항³⁾은 감사원이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간이 명확히 규정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과 달리, ‘감사기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 가능 횟수나 연장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3)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이첩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두고 있지 않음.

-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79.15일로, 전체 29건 중 60일 이내에 완결한 건은 3건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 현황>

국민감사청구 감사사항명	감사실시 결정일	완결일 (회신일)	감사결과 처리기간 (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 위반관련	14-7-14	14-9-23	71
나주호 독높이기 사업(수변공원조성)관련	14-10-7	15-6-2	238
KT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태조사결과 허위발표 관련 국민감사청구	15-7-24	15-11-5	104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국민감사청구	16-12-21	17-7-14	205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17-2-28	17-9-6	19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비위행위 관련 국민감사청구	17-7-4	17-11-1	120
멀티테크노밸리 공장부지 매립 및 분양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	17-12-20	18-3-27	97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18-2-6	18-12-7	304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보조금 관리 실태	18-6-26	19-1-14	202
2018년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실태	19-1-29	19-6-3	125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19-4-24	20-4-1	34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비위행위 관련	19-3-6	20-1-15	31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감사 등 의혹 관련	19-7-9	19-11-20	134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실태	19-11-4	20-2-24	112
국토교통부 등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20-11-2	21-8-4	275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등 관리감독 관련	21-11-30	23-1-9	405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위반 관련	21-9-7	22-7-1	29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 관련	21-11-30	22-5-25	176
한국가스공사 사옥 시설관리용역 직원 퇴직금 연체 등 관련	22-3-7	22-4-21	45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부적정한 보도자료 작성 관련	22-1-18	22-6-7	140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지연 관련	22-3-7	22-6-21	106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22-8-30	23-5-1	244
진주세무서의 부실 세무조사 관련	22-8-30	22-10-25	56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22-12-5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22-12-14	23-6-28	196
방송문화진흥회의 OO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사항	23-2-22		
채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제도 관련	23-4-12	23-6-20	69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이행관리 관련	23-11-22	24-3-8	107
OO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	24-1-31	24-7-10	161
평균처리기간	179.15		

* 자료: 감사원

□ 이에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같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으며, 국민감사청구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국민감사청구 실시기간을 최대 90일로 한정할 경우 국민감사청구 처리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청구자의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권리와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60일+30일) 내에는 반드시 국민감사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민감사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을 크게 초과하는 점, 국민감사청구 업무 자체의 속성 및 감사원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청구사항별로 청구사항의 범위·규모·난이도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의 구체성·정확성·충실성도 건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사항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감사원이 감사기간 준수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경우,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다른 감사요구의 기간을 살펴보면, ‘국회감사요구’는 5개월(3개월+2개월)의 감사 기한을 두고 있는 반면,⁴⁾ ‘주민감사청구’는 60일의 감사 기간 이후 감사 연장의 횟수, 기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⁵⁾⁶⁾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의 효율적 처리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획일적으로 최대 3

4)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 ⑧ (생략)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요구'의 경우, 5개월(3개월+2개월)의 조사 기한을 두고 있음.

「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월로 제한할 경우 감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감사가 제약되어 개정안 취지와 달리 국민의 권익구제 및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감사기간 연장사유 기간 청구인에게 통보 및 국회 상임위에 보고(안 제75조제2항)

- ☐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생략) <u><신설></u>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생략) <u>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 국민감사청구 감사기간 연장사유·기간의 청구인 통보는 현행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현재 감사원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⁷⁾
- 개정안은 감사원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7)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생략)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것으로, 감사청구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나, 감사원은 현재도 감사원규칙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감사기간 연장사유·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감사원 등이 보다 책임 있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감사실시 이후 청구자인 일반국민들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보받더라도 동 사유 및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감사청구 실시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적정성을 확인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보다 당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 감사요구'는 감사기간 연장 시 감사원이

국회에 중간 보고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음.⁸⁾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사항의 감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청구인 외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까지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법체계적으로도 부적절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8)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